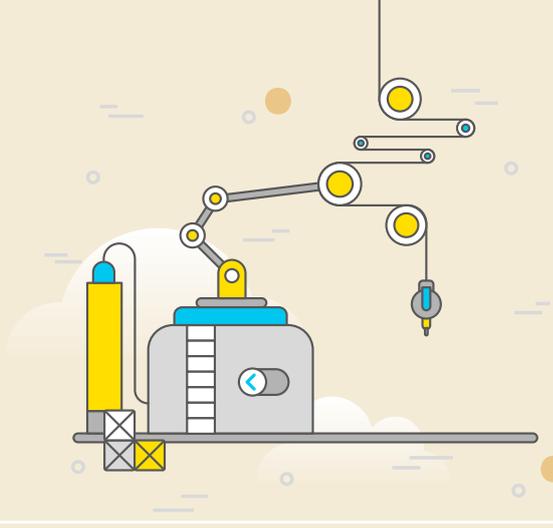


# 전자빔 용접장치(EBW) 생산·판매·사용자는 방사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.



전자빔용접장치는 전자를 가속하여 이용하는 장치로서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 전자빔용접장치 생산/판매/사용을 위해서는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인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.

## 인허가 절차



##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

- ▶ **필요서류** :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(생산허가), 제59조(판매허가), 제60조(사용허가), 제67조(사용신고)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(자료실)을 참조 바랍니다.
- ▶ **접수방법** :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
  - 온라인 :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(<https://rasis.kins.re.kr>)
  - 우편접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서담당자 앞
- ※ 문의 : 080-004-3355(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)

## 신청 유예기간 및 부담금

- ▶ **유예기간**
  - EBW 생산업체/판매업체 : ~2023.12월
  - EBW 사용업체 : ~2024.06월
- \* 기간 내 인허가 미신청 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(허가대상) 또는 제2항(신고대상) 위반으로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**부담금** :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」을 참조
- \* 유예기간 내 인허가 신청시 부담금 면제

담당자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철규 선임연구원(ckchoi@kins.re.kr/042-603-3051)  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봉기 선임연구원(kbg@kins.re.kr/042-603-3110)